

은행은 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 담 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동담보물건추가용)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바랍니다.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감대조

채 권 자	검	
근 저 당 권 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추가근저당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추가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별표1)의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별표2)의 추가할 공동담보물건 목록 란에 기재한 물건에 공동담보로서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제2조 계약조항의 적용

이 추가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도 제1조에 기재한 이미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 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주)한국씨티은행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 균분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별표 1)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표시

설정계약 :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근 저 당 의	관	할		지방법원		등기소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제	호
	채	권	최	고	액	금 원
표 시	물 건 목 록					
	소	유		자	물 건 표 시	순 위

(별표 2) 추가할 공동담보물건 목록 :

소 유 자	물 건 표 시	순 위

※ 추가근저당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미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성명 :	(인)
2. 위 약관과 이미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성명 :	(인)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